

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관련 주요 내용

□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 대상 건축물

- 연면적 5,000㎡ 이상의 건축물과 학교시설 등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 하는 건축물 등 으로 규정

□ 건축물 규모에 따른 시행 특례기간

- ① 연면적 3만㎡ 이상 건축물의 경우 2025년 7월 18일까지 유예
- ② 1만㎡ 이상 3만㎡ 미만 건축물은 2026년 7월 18일까지 유예
- ③ 5,000㎡ 이상 1만㎡ 미만 건축물은 2027년 7월 18일까지 유예

※ 연면적 3만㎡ 이상 건축물은 오는 2025년 7월 19일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기준의 적용을 받음

□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의 자격기준

-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의 인정교육을 이수해야 함

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[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-490호]
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」 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참고

【문의처】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☎044-202-6427

- 디지털정보담당관 정보통신계 ☎063-454-2172

※ 위 사항은 재입법 예고(안)을 기준으로 작성된 안내문으로 확정 시행 시 변경 될 수 있음